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참고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4.12.19.(목) 석간	배포	2024.12.18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팀 장	이상탁	(02-3145-5190)
		담당자	조사역	고민정	(02-3145-5194)

## [금융꿀팁] <157>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

### 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이번에는 **157번째로**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###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

①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
② '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,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.

③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
④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.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.

## 1

###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'내연금조회'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,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✓유의사항

-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**3영업일**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'내연금조회' 데이터는 **매월 10일에 업데이트** 됩니다.
-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**확정급여형(DB)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, 확정 기여형(DC)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**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개시예정일은 **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과 다를 수** 있습니다.
-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된 연금정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2

### '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,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.

- '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,2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**상향\***되었습니다.

\*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(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9호)

- 연금계좌에 적립한 **과세대상 금액\***에 대하여 1,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.

\*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,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
□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,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% ~ 5.5%)가 적용되지만,

○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(6.6% ~ 49.5%)하거나, ②분리과세 (16.5%)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○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,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1,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(16.5%)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**(참고) 연금소득 원천별 적용 세제**

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 <sup>1)</sup>		연금수령	연금외수령
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	→	과세제외	과세제외
② 이연된 퇴직소득	→	퇴직소득세 <sup>2)</sup> (10년 이하: 70% 10년 초과: 60%)	퇴직소득세
③ 과세대상 금액(①+②) 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② 연금계좌 운용소득	→ 1,500만원 이하	저율 분리과세 <sup>3)</sup> (3.3% ~ 5.5%)	기타소득세 <sup>4)</sup> (16.5%)
	→ 1,500만원 초과	종합과세 (6.6% ~ 49.5%) 또는 분리과세(16.5%) <sup>3)</sup>	기타소득세 <sup>4)</sup> (16.5%)

1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3 제1항  
 2) 「소득세법」 제129조 제1항  
 3)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9호, 제64조의4  
 4) 「소득세법」 제21조 제1항 제21호  
 5)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

**✓유의사항**

-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, **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.**
- **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

##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

-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**(확정기간형 연금)**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.5%,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.4%, 80세 이상인 경우 3.3%로 낮아집니다.
- **(종신형 연금)**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.4%, 80세 이상인 경우 3.3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(참고)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(「소득세법」 제12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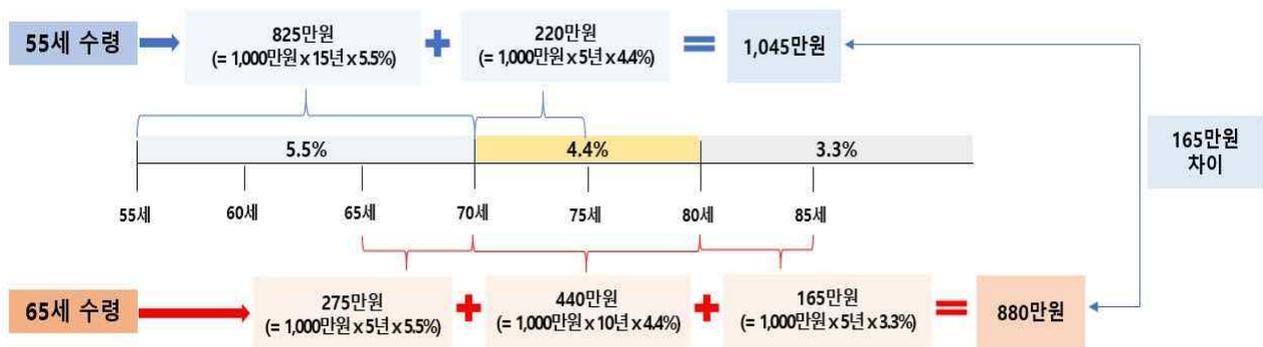
구분	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	연금소득세율*
확정기간형 연금	55세 ~ 69세	5.5%
	70세 ~ 79세	4.4%
	80세 이상	3.3%
종신형 연금	55세 ~ 79세	4.4%
	80세 이상	3.3%

\*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

-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·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.

### 사례

☀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, 20년 확정기간형 연금(年 1,000만원 수령 가정)



## 4

##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.

- 퇴직급여(퇴직금, 퇴직연금)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수령 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.
- **(10년 차 이하)**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%가 감면됩니다.
- **(11년 차 이상)**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 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,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%가 감면되어 약 10%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.

**(참고) 연간 연금수령한도**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)

 소득세법상 “연간 연금수령한도”란 과세기간 개시일\*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적용됩니다.

\*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

**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**

$$\text{연간 연금수령한도} = \frac{\text{연금계좌 평가액}}{\text{11-연금수령연차}} \times 120\%$$

**✓유의사항**

-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연금계좌 가입이 '13.3.1.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 연차를 6년부터 기산합니다.
- 「소득세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적용됩니다.
-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, **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.**

## 사례

☀ 2012. 1월 A회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홍길동씨가 2024. 1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

### ■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

※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3. 3. 1. 이전이므로 연금수령연차 6년차부터 기산

$$\text{연금개시 시점 연금수령한도} = \frac{2\text{억원}}{11-6} \times 120\% = 4,800\text{만원}$$

☞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,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% 감면

### ✓ 유의사항

■ 상기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, 연금수령 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**국세청(☎126)**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(참고)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<sup>1)</sup> 비교



1)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9호 및 제129조 제1항

**5**

**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.**

-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나(「소득세법」 §21①)
  -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부과됩니다.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§20조의2)
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,
  -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(참고)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**

구 분 (소득세법 시행령 §20조의2①)	인출한도	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	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
천재지변	X	연금소득세 (3.3~5.5%)	과세제외
가입자 사망·해외이주	X		
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	※ 인출한도 : ①+②+③ ①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(휴업) 월수 X 150만원 ③ 200만원		
사회적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		
개인회생·파산선고	X		
연금사업자 영업정지· 인가취소·파산	X		

**✓ 유의사항**

-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 목적으로 인출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(☎12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IRP계좌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항 목	세제내용																	
납입한도	-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(퇴직연금계좌 개인부담액 포함)																	
세제혜택	<table border="1"> <tr> <th>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</th> <th>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</th> <th>세액 공제율</th> </tr> <tr> <td>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b>600만원</b> 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)                 </td> <td>16.5%</td> </tr> <tr> <td>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</td> <td>13.2%</td> </tr> </table>	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	세액 공제율	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<b>600만원</b> 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)	16.5%	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13.2%									
	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	세액 공제율															
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<b>600만원</b> (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)	16.5%																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	13.2%																
연간연금 수령한도	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\text{(11-연금수령연차)}} \times 120\% \quad (\text{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\%})$ <p>※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                  ※ '13.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(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%)</p>							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①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 <sup>1)</sup>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</th> <th>연금소득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정형</td> <td>55세 ~ 69세</td> <td>5.5%</td> </tr> <tr> <td>70세 ~ 79세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신형</td> <td>55세 ~ 79세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	연금소득세율	확정형	55세 ~ 69세	5.5%	70세 ~ 79세	4.4%	80세 이상	3.3%	종신형	55세 ~ 79세	4.4%	80세 이상	3.3%
	구 분	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	연금소득세율															
확정형	55세 ~ 69세	5.5%																
	70세 ~ 79세	4.4%																
	80세 이상	3.3%																
종신형	55세 ~ 79세	4.4%																
	80세 이상	3.3%																
②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 <sup>1)</sup>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(기타소득세 16.5%) 가능																		
연금외 수령시 과세	-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																	
부득이한 인출요건	- ① 천재지변,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사회적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/개인회생 ⑥ 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- 과세 :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(3.3~5.5%)																	

1)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: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
 2) 도표상 세율 : 지방소득세(주민세) 포함

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**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